##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9 발의연월일: 2020. 10. 28.

발 의 자:김미애·김정재·권성동

권명호 · 정희용 · 양금희

서정숙 • 유창현 • 전주혜

유경준・이 용・김성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동생이 사망하고 형은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에서 방임·학대를 의심한 이웃이 3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그런데 초등학생 형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사례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피해를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학대행위자에대한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 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해도 별다른 법적 강제력이 없 어 불응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 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 계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③ (생 략)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
	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	제11조의2(조사) ①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	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
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	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3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

	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 • 진
	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한 사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